

서울중앙지방법원 2020. 8. 26 선고 2019나78311 판결 [구상금 등 청구의 소]

재판경과

서울중앙지방법원 2020. 8. 26 선고 2019나78311 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2019. 11. 11 선고 2018가단5235449 판결

전 문

원 고 A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기풍 담당변호사 손성락

원고보조참가인, 항소인

주식회사 B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가람

담당변호사 양석표, 유현송

피고, 피항소인

D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인강 담당변호사 박원환, 이유선

소송복대리인 변호사 임춘화

변론 종결 2020. 8. 12

판결선 고 2020. 8. 26

제1심 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2019. 11. 11. 선고 2018가단5235449 판결

주 문

1. 원고보조참가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보조참가인이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및 항 소 취 지

1. 청구취지

피고는 제1심 공동피고 C와 공동하여 원고에게 60,000,000원에서 피고와 제1심 공동피고 C사이의 제 1심별 지목록 기재 부동산에 대한 임대차 계약에 의하여 피고가제 1심 공동피고 C에 대하여 갖는 일체의 채권을 공제한 나머지 돈을 57, 600, 000원의 한도내에서 지급하라.

2. 항소취지

제1심 판결중 피고에 대한 부분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피고는 제 1심공동 피고 C와 공동하여 원고에게 18, 197, 910원에서 피고와 제 1심 공동피고 C 사이의 제 1심 별지목록 기재 부동산에 대한 임대차 계약에 의하여 피고가제 1심공동 피고 C에 대하여 갖는 일체의 채권을 공제한 나머지 돈을 지급하라.

이 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각'피고 이을 '제 1심공동 피고 C' 으르고치고,원고와 원고 보조 참가인이 당심에서 한 주장에 관한 판단을 아래와 같이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 이유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추가하는 부분

원고와 원고보조참가인은, 피고가 채권 양도통지를 받은 이후에 원고보조참가인으로부터 질권설정이 해지되었다는 통지를 받고도 원고에게 문의를 하거나 임대차보증금을공탁하지 아니하는 등 법률적인

검토를 제대로 하지 않은 과실이 있으므로, E와 C에게한 변제로 원고에 대한 채무를 면할 수 없다고 주장한다.

이사건 근질권설정계약은 원고 보조 참가인과제 1심공동 피고 C사이에 체결된 것으로 피고는 위계약의 당사자가 아닌 점, 원고 보조 참가인은 시중은행으로 여신, 금융분야에서 큰 공신력을 가지고 있는 점, 대법원 2004. 6. 11. 선고 2003 다 1601 판결은강행규정위반임에도 이를 간과하고 변제한 경우로 이 사건에 그대로 적용할 것은 아닌 점등을 종합하면, 일반인인 피고가 원고 보조 참가인이 작성한 질권설정해지 통지서를 믿고 E와 제 1심공동 피고 C에게 임대차 보증금 중 일부를 지급한 데에 과실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에 대한 청구는 위인정범위내에서 이유있어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여야 한다.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보조참가인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한다.

재판장 판사 박태안판사 박성민판사 김연수